

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

1. 인증번호 :
2. 제작자등의 명칭 :
3. 인증의 범위 :
4. 유효기간 :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9제1항,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